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503
----------	-------

발의연월일 : 2022. 11. 28.

발의자 : 강선우 · 남인순 · 박광온
서영석 · 송옥주 · 윤영찬
진성준 · 한정애 · 허영
홍정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도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를 TV 및 인터넷, 가족·지인, 병원 등의 순으로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2019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형성원인은 대중매체, 개인적 경험, 정신질환 치료방법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 수립 시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언론에 대하여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의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13호 및 제70조의2 신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언론의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정신질환보도 권리기준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보도로 인한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유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 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7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언론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 (생 략) <p>③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12. (생 략)</p> <p><u><신 설></u></p>	<p>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 (현행과 같음) <p>③ ----- ----- -----.</p> <p>1. ~ 12. (현행과 같음)</p> <p><u>13. 언론의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 확보 방안</u></p>
<p><u>13. (생 략)</u></p> <p>④ ~ ⑦ (생 략)</p> <p><u><신 설></u></p>	<p><u>14. (현행 제13호와 같음)</u></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p><u>제70조의2(정신질환보도 권리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보도로 인한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유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 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7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리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p> <p><u>② 언론은 제1항에 따른 협조</u></p>

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